

『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20일

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최 윤 구

나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과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
맞춤형 급여내용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,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
정하도록 한 “위기상황의 기준”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
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(안 제2조)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 신설(안 제3조의2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8조, 제11조, 제12조의3, 같은 법 부칙 제5조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과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내용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,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“위기상황의 기준”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고,
- 아울러,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“위기상황의 기준”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
위기상황에 처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이 지난 2015년 7월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